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25일 포함)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자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25(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등급 등의 판단기준임)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제결
일정	2024.12.05(목)	2024.12.06(금)	2024.12.09(월)	2024.12.13(금)	2024.12.17(화) ~ 2024.12.24(화)	2024.12.26(목) ~ 2024.12.28(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09:00~17:30)</li> <li>(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09:00~17:30)</li> <li>(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60)</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합단지)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외지구 및 비청약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합단지)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외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인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판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2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전락과 - 2871호(2024.11.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대
-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지상 15층, 12개동, 총 543세대(조합 238세대, 임대 26세대, 보류지 5세대) 중 일반분양 274세대 [특별공급 135세대(기관추천 27세대, 다자녀가구 27세대, 신혼부부 49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6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 000688	01	059.5700A	59A	59.5700	20.2400	79.8100	64.4800	144.2900	40.2335	89	9	9	16	2	8	44	45	4	
	02	059.5400B	59B	59.5400	20.7700	80.3100	64.4400	144.7500	40.2132	14	1	1	2	1	6	8	2		
	03	084.9400A	84A-1	84.9400	26.8000	111.7400	91.9400	203.6800	57.3683	89	9	9	16	2	8	44	45	23	
			84A-2	84.9400	26.8000	111.7400	91.9300	203.6800											
	04	084.7100B	84B-1	84.7100	27.2200	111.9300	91.6900	203.6200	57.2130	29	3	3	5	1	2	14	15	2	
			84B-2	84.7100	27.2200	111.9300	91.6900	203.6200											
	05	084.9800C	84C-1	84.9800	27.4000	112.3800	91.9700	204.3500	57.3953	53	5	5	10	2	5	27	26	5	
			84C-2	84.9800	27.4000	112.3800	91.9700	204.3500											
	합 계										274	27	27	49	8	24	135	139	36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계약시						입주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59A	89	102동 1,3,4,5호 104동 1,3,4,5호 105동 1,2호 110동 1,2,3,4호 111동 1,2,3,4호	1층	1	622,800,000	415,200,000	-	1,038,0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311,400,000		
			2층	6	636,600,000	424,400,000	-	1,061,0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318,300,000		
			3층	16	650,400,000	433,600,000	-	1,084,000,000	108,400,000	108,400,000	108,400,000	108,400,000	108,400,000	108,400,000	108,400,000	108,400,000	325,200,000		
			4층	15	663,600,000	442,400,000	-	1,106,0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331,800,000		
			5층	8	670,200,000	446,800,000	-	1,117,0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335,100,000		
			6-10층	21	677,400,000	451,600,000	-	1,129,0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338,700,000		
			11층 이상	22	684,000,000	456,000,000	-	1,140,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342,000,000		
			59B	14	102동 2호 104동 2호	1층	2	620,400,000	413,600,000	-	1,034,0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310,200,000
						2층	2	634,200,000	422,800,000	-	1,057,0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317,100,000
						3층	2	647,400,000	431,600,000	-	1,079,0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323,700,000
4층	2	661,200,000				440,800,000	-	1,102,000,000	110,200,000	110,200,000	110,200,000	110,200,000	110,200,000	110,200,000	110,200,000	330,600,000			
5층	2	667,800,000				445,200,000	-	1,113,000,000	111,300,000	111,300,000	111,300,000	111,300,000	111,300,000	111,300,000	111,300,000	333,900,000			
84A	89	101동 1,2,3,4호 103동 1,2,3,4호 106동 1,2,3,4호 107동 1,2,3,4호 108동 1,2,3,4호 109동 1,2,3,4호	1층	20	793,200,000	528,800,000	-	1,322,000,000	132,200,000	132,200,000	132,200,000	132,200,000	132,200,000	132,200,000	132,200,000	396,600,000			
			2층	23	810,000,000	540,000,000	-	1,350,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405,000,000			
			3층	23	827,400,000	551,600,000	-	1,379,000,000	137,900,000	137,900,000	137,900,000	137,900,000	137,900,000	137,900,000	137,900,000	413,700,000			
			4층	22	844,800,000	563,200,000	-	1,408,000,000	140,800,000	140,800,000	140,800,000	140,800,000	140,800,000	140,800,000	140,800,000	422,400,000			
			5층	1	853,200,000	568,800,000	-	1,422,0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426,600,000			
84B	29	112동 1,4호	1층	1	794,400,000	529,600,000	-	1,324,000,000	132,400,000	132,400,000	132,400,000	132,400,000	132,400,000	132,400,000	132,400,000	397,200,000			
			2층	2	811,800,000	541,200,000	-	1,353,0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135,300,000	405,900,000			
			3층	2	829,200,000	552,800,000	-	1,382,000,000	138,200,000	138,200,000	138,200,000	138,200,000	138,200,000	138,200,000	138,200,000	414,600,000			
			4층	2	846,000,000	564,000,000	-	1,410,000,000	141,000,000	141,000,000	141,000,000	141,000,000	141,000,000	141,000,000	141,000,000	423,000,000			
			5층	2	855,000,000	570,000,000	-	1,425,000,000	142,500,000	142,500,000	142,500,000	142,500,000	142,500,000	142,500,000	142,500,000	427,500,000			
			6-10층	10	863,400,000	575,600,000	-	1,439,000,000	143,900,000	143,900,000	143,900,000	143,900,000	143,900,000	143,900,000	143,900,000	431,700,000			
			11층 이상	10	872,400,000	581,600,000	-	1,454,000,000	145,400,000	145,400,000	145,400,000	145,400,000	145,400,000	145,400,000	145,400,000	436,200,000			
84C	53	105동 3,4호 109동 4호 112동 2,3호	1층	4	789,600,000	526,400,000	-	1,316,0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394,800,000			
			2층	5	807,000,000	538,000,000	-	1,345,0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403,500,000			
			3층	5	823,800,000	549,200,000	-	1,373,0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411,900,000			
			4층	5	841,200,000	560,800,000	-	1,402,0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420,600,000			
			5층	5	849,600,000	566,400,000	-	1,416,000,000	141,600,000	141,600,000	141,600,000	141,600,000	141,600,000	141,600,000	141,600,000	424,800,000			
			6-10층	17	858,000,000	572,000,000	-	1,430,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429,000,000			
			11층 이상	12	867,000,000	578,000,000	-	1,445,000,000	144,500,000	144,500,000	144,500,000	144,500,000	144,500,000	144,500,000	144,500,000	433,500,000			

## 3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li> <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li></ul>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